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스포츠의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의 진흥과 구민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이스포츠 진흥사업) 구청장은 이스포츠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및 지원
3. 이스포츠 선수·동호인·동호회 육성 및 지원
4.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및 이스포츠팀의 창단·운영 지원
5. 청소년 대상 이스포츠 활동· 체험 및 참여 프로그램 지원
6. 구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생활 이스포츠 체험 및 교육
7. 이스포츠 관련 행사와 지역 문화·관광 및 지역상권의 연계
8. 그 밖에 구청장이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관리·운영위탁)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게임 산업육성 등에 경험과 역량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및 이스포츠 관련 기관·단체·기업 등과 협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1】

관 계 법 령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이스포츠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스포츠”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2. “전문 이스포츠”란 이스포츠 선수들이 행하는 이스포츠 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 이스포츠”란 여가와 친목도모를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이스포츠 활동을 말한다.
4. “이스포츠산업”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5. “이스포츠시설”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6. “이스포츠 선수”란 이스포츠 단체의 정하여진 바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7. “이스포츠 단체”란 이스포츠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스포츠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방 이스포츠의 진흥)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2.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3. 이스포츠팀의 창단 및 운영
4. 이스포츠대회의 개최
5. 학교 및 청소년 대상 이스포츠 활동과 진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